

【붙임】

「평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 
운영 조례안」

제 출 자 : 함명섭의원외 2인

# 「평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 년월일 : 2008. 05 . 23

발 의 의 원 : 함명섭 의원외 2명

## 1. 제안이유

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므로  
서,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제도적 근거  
를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

나.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
○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다. 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대상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 ~ 제5조)

라.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 ~ 제9조)

마. 비밀엄수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3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붙임』

나. 예산조치 : 없음

## 평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이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평창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용역”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, 연구, 설계, 분석, 조사, 구매조달, 시험, 감리, 시운전, 평가, 자문, 지도,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.
2. “학술용역”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·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·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.
3. “종합기술용역”이라 함은 도로, 공항, 철도, 하천, 상·하수도, 관개,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.
4. “공사설계용역”이라 함은 건설, 통신,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당연직 위원은 평창군부군수, 기획감사실장, 재무과장, 건설과장, 농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, 각 분야 전문가,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용역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
2.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
3.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
4.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**제5조(심의대상)**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학술용역 : 용역비 10백만원 이상
2. 종합기술용역 : 용역비 30백만원 이상
3. 공사설계용역 : 용역비 30백만원 이상
4.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기타 용역 : 용역비 30백만원 이상
5. 제2호 내지 제3호의 실시설계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.

**제6조(위원장)**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간사)**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.

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**제8조(위원의 임기)**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에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.

③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9조(회의)**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안건제출 부서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의견청취 등)**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1조(회의록 등)**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수당 등)**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**제13조(비밀엄수)**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『불임』

## 관 계 법 령

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